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배려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뛰거나 문, 창문 등을 세게 여닫는 소음

총간소음 발생원인은 대부분
발걸음과 뛰는 소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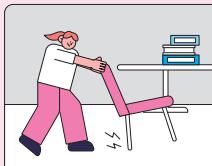
실내 슬리퍼 착용, 소음방지 매트
현관문 충격완화 범퍼 설치



🚫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어 내는 소음

가구를 이동시킬 때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소음방지 패드 부착



🚫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음

사용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가전제품 사용에 주의합니다.

믹서기, 커피머신, 블랜더
제품하단에 진동방지 패드 부착



🚫 악기, 운동기구, 텔레비전 소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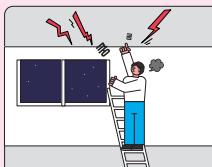
너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 소음

보복 소음을 등의 행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경범죄, 폭행죄 처벌 등



인천광역시 총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

대상

인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입주민

-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상복합 상가) 등 제외

상담문영

평일(월~금), 09:00 ~ 18:00 * 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상담, 방문 컨설팅 및 총간소음 예방교육 지원

☎ 032-440-4754



전화상담

총간소음 관련 갈등 상담, 방문 컨설팅,
예방 교육 안내 및 일정 등 상담



방문 컨설팅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총간소음 갈등조정 기법 등 컨설팅



총간소음 예방교육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총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의 강사 지원

걸을마다 배려를 담아주세요

소음에서 고요까지, 총간소음을 줄이는 여정

직접충격 소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하는 소리,
어른의 발소리,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 망치질이나 못 박는 소리

공기전달 소음

피아노, 악기소리, TV, 음향기기 등 소리를 내는 물건들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http://www.on-apt.kr

- 주택민원-총간소음 : 컨설팅 및 예방교육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총간소음을 이해하기

총간소음이란?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 ※ 단,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외

**총간소음은
벽을 타고
전달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로 건설되어 총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총간소음은 윗집에서만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다른 인접한 세대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접총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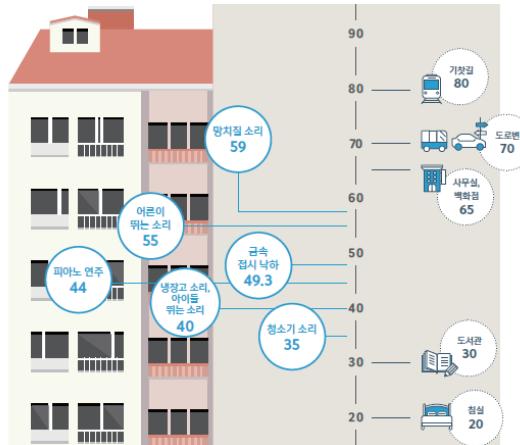
총간소음의 구분	총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1분간 등가소음도(Leq)	39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총간소음의 구분	총간소음의 기준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2023. 1. 2.),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비교소음으로 살펴보는 총간소음



* 출처: 「총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안전사례집」 한국환경공단, 2018.

총간소음 관련 제도

① 입주자등의 총간소음 예방 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은 공동주택 내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 총간소음을 포함한 다양한 소음(벽간소음, 인접 세대 간 소음, 대각선 세대 간 소음을 포함)을 통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② 총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7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총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③ 총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총간소음을 해소절차

내부조정

1단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 총간소음 발생 중단 및 소음 차단 조치 요청
- 관리주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 총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실시(필요시)
- 총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단계

총간소음관리위원회

-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구성
- 총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조사
- 분쟁의 자율적 중재 및 조정
- 총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체교육)
- 기타 분쟁 방지 및 예방 업무

외부조정

3단계

이웃사이센터/총간소음 전문 컨설팅

이웃사이센터(환경부)

- 총간소음 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
- 총간소음 진단 측정기관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총간소음 전문 컨설팅(인천광역시)

- 총간소음 상담 및 현장진단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중재 업무
- 아파트 단지에 방문하여 예방교육 실시

4단계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총간소음 분쟁 관할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시군구)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거나 기타 분쟁에 대해 처리

* 쌍방이 조정을 받기로 한 경우 처리 가능